



서우회계컨설팅 유한회사

뉴스레터

2026 년 제 3 분기

베트남 하노이

목차

개인소득세(“PIT”) 소식	3
개인소득세에 관한 정부의 2026 년 6 월 30 일자 시행령 제 253/2026/ND-CP 호 및 재무부의 2026 년 6 월 30 일자 시행규칙 제 87/2026/TT-BTC 호	3
조세행정	7
조세행정부 제 108/2025/QH15 호의 시행을 안내하는 정부의 2026 년 6 월 30 일자 시행령 제 252/2026/ND-CP 호(2026 년 7 월 1 일 시행)	7
세무 분야 전자거래에 관한 재무부의 2026 년 6 월 30 일자 시행규칙 제 89/2026/TT- BTC 호(2026 년 7 월 1 일 시행)	14
기타	24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의 조세행정에 관한 정부의 2026 년 6 월 30 일자 시행령 제 255/2026/ND-CP 호(2026 년 7 월 1 일 시행)	24
수출입 물품의 조세행정에 관한 재무부의 2026 년 6 월 30 일자 시행규칙 제 86/2026/TT- BTC 호	27
세무등록에 관한 재무부의 2026 년 6 월 30 일자 시행규칙 제 90/2026/TT-BTC 호	29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증빙에 관한 정부의 2026 년 6 월 30 일자 시행령 제 254/2026/ND-CP 호 및 재무부의 2026 년 6 월 30 일자 시행규칙 제 91/2026/TT-BTC 호	30
납세기한 연장에 관한 정부의 2026 년 6 월 27 일자 시행령 제 245/2026/ND-CP 호	32
시행규칙 제 95/2026/TT-BTC 호 - 조세조약, MAP 및 APA 에 관한 새로운 지침.....	34
공문	40
<i>적격국내최저한세("QDMTT")의 적격 급여비용에 관한 2026 년 4 월 28 일자 공문 제 2697/CT-CS 호 40</i>	
<i>수출가공기업("EPE")에 적용되는 세관 조사 감독 요건에 관한 2026 년 8 월 7 일자 공문 제 20010/CHQ-GSQL 호</i>	<i>41</i>
<i>장기 결손·저마진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에 관한 2026 년 3 월 31 일자 공문 제 1927/CT-KTr 호</i>	<i>41</i>
<i>근로자파견 활동의 세무처리에 관한 2026 년 6 월 5 일자 공문 제 3705/CT-CS 호</i>	<i>42</i>
<i>수출물품 VAT 환급에 관한 2026 년 6 월 30 일자 공문 제 4413/CT-CS 호</i>	<i>43</i>
<i>중단된 투자프로젝트의 VAT 환급에 관한 2026 년 6 월 23 일자 공문 제 4195/CT-CS 호</i>	<i>44</i>
<i>외국인투자 중소기업의 CIT 면제에 관한 2026 년 6 월 11 일자 공문 제 3897/CT-CS 호</i>	<i>45</i>
<i>외국인투자기업의 CIT 경감세율에 관한 2026 년 4 월 6 일자 공문 제 820/CST-TN 호</i>	<i>45</i>

개인소득세("PIT") 소식

개인소득세에 관한 정부의 2026 년 6 월 30 일자 시행령 제 253/2026/ND-CP 호 및 재무부의 2026 년 6 월 30 일자 시행규칙 제 87/2026/TT-BTC 호

2026 년 6 월 30 일, 정부는 개인소득세법 제 109/2025/QH15 호의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령 제 253/2026/ND-CP 호("시행령 253")를, 재무부는 시행규칙 제 87/2026/TT-BTC 호("시행규칙 87")를 공포하였습니다. 두 규정은 모두 202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급여·임금소득 관련 식대 규정(2026 년 7 월 1 일부터 적용)을 제외하고 2026 과세연도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I. 시행령 제 253/2026/ND-CP 호

1. 누진세율 및 인적공제

2026 년부터 급여·임금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구간이 7 단계에서 5 단계로 축소됩니다. 최고세율은 35%로 유지되나, 35% 세율 적용 기준은 월 과세소득 8 천만 VND 초과에서 1 억 VND 초과로 상향됩니다.

월 본인공제액은 1,550 만 VND 로, 부양가족 1 인당 공제액은 월 620 만 VND 로 인상됩니다.

월 과세소득	세율
1,000 만 VND 이하	5%
1,000 만 VND 초과~3,000 만 VND 이하	15%
3,000 만 VND 초과~6,000 만 VND 이하	25%
6,000 만 VND 초과~1 억 VND 이하	30%

1 억 VND 초과	35%
------------	-----

2. 과세소득 및 임직원 복리후생 관련 변경사항

- 식대 - 시행령 253 제 8 조 제 1 항 g 호: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 중 1 인당 월 120 만 VND 를 초과하는 금액은 2026 년 7 월 1 일부터 PIT 과세 대상입니다.
- 퇴직수당 및 실직수당 - 시행령 253 제 8 조 제 3 항 h 호: 법정 퇴직수당과 실직수당은 PIT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재무규정, 내부규정,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서 법정 수준보다 높은 수당을 정한 경우 실제 초과 지급액도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연장·야간근로수당 - 시행령 253 제 26 조: 종전에는 통상 근로시간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만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제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 급여 전액이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 - 시행령 253 제 26 조: 근로 종료 또는 실직 시 지급하는 미사용 연차휴가 관련 급여·임금은 노동법 제 113 조 제 3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사용자가 건설한 숙소 - 시행령 253 제 8 조 제 2 항 h 호: 사용자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해 건설한 숙소와 전기, 수도 및 기타 관련 서비스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부양가족

- 부양가족 인정 대상 - 시행령 253 제 47 조: 시행령 253 은 법률행위능력을 상실한 만 18 세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에 추가하는 등 여러 중요한 변경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자녀 외 근로연령의 부양가족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을 중심으로 규정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능력 상실률이 81%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부양가족 등록기한 - 시행령 253 제 48 조: 부양가족 등록기한은 해당 과세연도의 12 월 31 일입니다.

4. 추가 공제

- 의료비 - 시행령 253 제 49 조: 납세자와 부양가족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의 치료비는 연간 최대 2,300 만 VND 까지 공제됩니다. 관련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다른 재원에서 보전받지 않은 비용이어야 합니다.
- 교육비 - 시행령 253 제 49 조: 납세자와 부양가족이 국내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는 적정한 세금계산서·증빙서류가 있고 다른 재원에서 보전받지 않은 경우 연간 최대 2,400 만 VND 까지 공제됩니다.
- 추가 연금보험, 자발적 연금제도 및 생명보험 - 시행령 253 제 8 조 제 2 항 e 호 및 제 46 조 제 2 항 a 호: 사용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한 최대 공제 가능 납입액이 1 인당 월 100 만 VND 에서 300 만 VND 로 인상됩니다.

5. 원천징수, 신고 및 연말정산

- 10% 원천징수 - 시행령 253 제 50 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3 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주자의 의무적 10% 원천징수 기준액이 지급 건당 200 만 VND 에서 500 만 VND 로 인상됩니다. 지급액이 500 만 VND 미만이라도 개인이 요청하는 경우 지급자는 10%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위임 - 시행령 253 제 51 조: 개인이 해당 기타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이미 10%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의 기준액이 월평균 1,000 만 VND 에서 1,500 만 VND 로 인상됩니다.
자선·인도적 기부금 또는 시행령 253 제 49 조에 따른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신청하려는 개인은 직접 PIT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 해외에서 지급된 소득 - 시행령 253 제 67 조: 베트남 조직 또는 개인이 해외 당사자에게 급여·임금 대지급금을 상환하는 경우, 베트남상환하는 자가 해당 개인을 대신하여 PIT 를 원천징수·신고·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6. ESOP 및 기타 소득 항목

- 무상주 및 ESOP - 시행령 253 제 50 조 제 3 항: 주식 양도 시 개인이 수탁계좌를 보유한 증권회사 또는 상업은행은 다음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PIT 0.1%, 그리고
 - 무상주 또는 ESOP 에 귀속되는 급여·임금소득에 대한 PIT 10%.
 연말에 개인은 관련 무상주·ESOP 소득을 급여·임금소득에 합산하여 PIT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주최한 경연·행사의 상금 - 시행령 253 제 8 조 제 2 항 i 호: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최한 경연 또는 행사에서 받은 상금은 급여·임금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받은 보수 - 시행령 253 제 8 조 제 2 항 c 호: 용역을 제공하지만 사업활동에 관한 사업자등록 또는 세무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지급한 보수는 급여·임금소득으로 간주됩니다.

II. 시행규칙 제 87/2026/TT-BTC 호

시행규칙 87 은 시행령 253 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안내하며, 특히 부양가족의 소득요건과 증빙서류에 중점을 둡니다.

1. 부양가족 소득 기준 - 시행규칙 87 제 3 조

부양가족은 소득이 없거나 모든 원천의 월평균 소득이 300 만 VND 이하이어야 하며, 종전 기준은 100 만 VND 였습니다.

이 변경으로 PIT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증빙서류 - 시행규칙 87 제 4 조

시행규칙 87 은 다음을 포함한 일부 부양가족 유형에 추가 서류 요건을 도입합니다.

- 법률행위능력을 상실한 만 18 세 이상 자녀: 법률행위능력 상실 확인서 사본
- 장애인: 관련 규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근로능력 상실률이 81%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조세행정

조세행정법 제 108/2025/QH15 호의 시행을 안내하는 정부의 2026 년 6 월 30 일자 시행령 제 252/2026/ND-CP 호(2026 년 7 월 1 일 시행)

2025 년 12 월 10 일 국회는 조세행정법 제 108/2025/QH15 호(“신 조세행정법” 또는 “신법”)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의 시행을 안내하기 위해 정부는 2026 년 6 월 30 일 시행령 제 252/2026/ND-CP 호(“시행령 252”)를 공포하였으며, 이는 202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I. 조세행정 모델의 전환: 전통적 행정에서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 기술 활용, 위험기반 관리 및 준법관리기반 행정으로

1. 납세자 분류 및 준법관리 체계의 적용

신법의 근본적인 변화 중 하나는 업종, 법적 형태, 소유구조, 사업 규모, 국가예산 기여 수준 및 세법 준수 이력 등의 기준에 따른 납세자 분류 체계의 도입입니다.

신법은 기존의 “위험관리” 개념과 함께 “준수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과세당국이 각 납세자의 세법 준수 수준을 평가·모니터링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수 수준이 양호하고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해 시행령 252 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우선 처리를 규정합니다.

- 조세행정 절차의 처리
- 자동화 절차의 적용
- 원격 조사 및 감독
- 납세자 지원 서비스
- 준수등급의 고려
-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의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APA”) 및 상호합의절차(“MAP”) 관련 절차

이 규정은 주로 위험을 기반으로 하던 전통적 조세행정 모델에서 납세자의 세법 준수 수준이 적용되는 행정조치와 과세당국의 심사 강도를 결정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하는 준수관리 모델로의 전환을 반영합니다.

2. 조세행정 절차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촉진

신법은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에 중앙집중형 조세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무업무 처리의 자동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신 조세행정법의 방향에 따라 시행령 252 는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체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등록은 주로 전자적 방식으로 수행되거나 조세행정 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 일부 경우에는 기관 간 원스톱 체계에 따라 국가기관들이 공유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무등록이 이루어집니다.
- 준수 수준이 양호하고 과세당국과 전자데이터를 연계·공유할 의사가 있는 납세자에게는 자동화 절차의 우선 적용, 원격 조사·감독 및 기타 적절한 행정조치를 포함한 우대 관리체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시행령 252 는 세무데이터, 위험관리 기준 및 과세당국의 자동처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세금 환급·면제·감면을 포함한 조세행정 자동처리 체계를 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전자데이터와 자동화 절차의 확대 사용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절차를 줄이며 향후 데이터 기반 준수관리 및 위험관리 체계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세금의 자동 환급·면제·감면

신법은 다음 제도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자동 세금 환급

- 자동 세금 면제
- 자동 세금 감면

이에 따라 시행령 252 는 신청서류, 기한 및 과세당국의 처리 순서를 포함하여 세금 환급·면제·감면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다만 자동 환급·면제·감면 절차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아직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하위 법령과 실제 집행을 통해 계속 안내되거나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4. 과세당국의 데이터 접근권 확대

신법에 따라 과세당국은 탈세 징후가 있는 일부 경우 다음 자료에 대한 추가 접근권을 갖습니다.

- 회계 소프트웨어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 금전등록기 시스템

또한 과세당국은 법률이 정한 순서와 절차에 따라 탈세 징후와 관련된 문서를 일시 압수할 권한을 갖습니다.

종전 규정과 비교하여 신법은 과세당국이 조세행정 목적으로 전자데이터 원천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시행령 252 는 데이터의 범위, 접근 방법 또는 납세자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체계에 대해 아직 상세히 안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자 데이터 접근 규정의 실제 시행에는 향후 관할기관의 추가 지침 또는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II. 세금 신고 및 준수 관련 주요 변경사항

1. 세금 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의 확대

시행령 252 는 다음을 포함하여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경우를 보완하고 명확히 합니다.

- 급여·임금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급여·임금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PIT”)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세금 신고기간 중 외국인계약자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 ODA 프로그램·프로젝트, 무상원조 및 외교 특권·면제를 받는 기관과 관련된 일부 부가가치세(“VAT”) 환급 서류
- VAT 과세대상이 아니고 법인소득세(“CIT”)가 면제되는 국채 투자 또는 국가에 대한 대출에서 외국인계약자에게 지급된 소득
- 과세당국이 납세의무를 확정하고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기에 충분한 데이터를 이미 보유한 일부 경우

세금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의 확대는 과세당국이 납세의무를 확정할 충분한 정보를 이미 보유한 상황에서 조세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의무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2. 수정신고 기한 경과 후 발견된 오류에 대한 소명제도 도입

신 조세행정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종전 10 년이 아닌, 오류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신고기한부터 5 년 이내에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 후 발견된 오류에 대해 시행령 252 는 납세자가 통상 절차에 따른 수정신고는 할 수 없지만, 주로 조정으로 인해 납부세액이 증가하거나 공제·환급 가능 세액이 감소하는 일부 경우 소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변경은 뒤늦게 발견된 과거 오류를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한을 줄이므로 정기적인 세무준수 검토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3.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정상 CIT 수정신고 적용 환율 결정원칙 최초 안내

시행령 252 는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정에 따른 CIT 수정신고 및 세무조사·검사 후 조정에 적용되는 환율의 구체적인 결정원칙을 최초로 규정합니다.

III. 납세의무 관리 강화

1. 해외 이익송금 법적 체계의 정비

시행령 252 는 조세행정법 시행 안내 문서에서 처음으로 외국인투자자의 해외 이익송금 요건을 규정합니다. 종전에는 주로 재무부 시행규칙 제 186/2010/TT-BTC 호가 이 사항을 규율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시행령 252 는 기업이 관련 세무·재정 의무를 이행한 후 외국인투자자가 이익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 제 186/2010/TT-BTC 호의 접근방식을 승계합니다. 다만 종전 규정과 비교하여 세금, 기타 국가예산 징수금, 법정 납기 도래 지연이자 및 과태료를 포함한 이행 대상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이익을 국외 송금하는 시점에 기업에 미납세금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직접투자활동을 청산하면서 이익을 국외로 송금하는 경우, 시행령 252 는 납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의무를 포함하여 조세행정법상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납세의무도 이행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함으로써 투자활동 종료 시 정산해야 할 납세의무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베트남 내 직접투자활동의 종료 및 관련 국외 이익송금 거래를 계획·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조세채무 강제징수 시 출국정지 규정의 정비

출국정지 해제를 위한 보다 유리한 조건

시행령 252 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의 출국정지를 적시에 해제하기 위한 여러 체계를 도입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납부 데이터가 아직 갱신되지 않은 경우를 처리하는 체계를 추가하고, 미납세액이 적용 기준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 출국정지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국정지 대상자의 확대

시행령 252 는 출국정지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합니다. 특히 법정대표자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기업의 실질소유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상 출국정지는 다음 대상에 적용됩니다.

- 120 일을 초과하여 연체된 세금채무가 5 천만 VND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가구사업주
- 120 일을 초과하여 연체된 세금채무가 5 억 VND 이상인 기업의 법정대표자 또는 실질소유자
- 등록주소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베트남 출국 전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와 관련된 기타 일부 경우

이러한 변경은 과세당국이 조세채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납세자의 행정상 어려움을 줄이는 방향으로 출국정지 체계를 정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실질소유자를 적용 범위에 포함한 것은 기업의 납세의무 이행에 관여하는 개인의 책임을 확대하는 추세를 반영합니다.

세무 분야 전자거래에 관한 재무부의 2026 년 6 월 30 일자 시행규칙 제 89/2026/TT-BTC 호(2026 년 7 월 1 일 시행)

재무부는 2026 년 6 월 30 일자 시행규칙 제 89/2026/TT-BTC 호(“시행규칙 89”)를 공포하였으며, 이는 202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동 시행규칙은 시행규칙 제 80/2021/TT-BTC 호(“시행규칙 80”), 세무 분야 전자거래에 관한 시행규칙 제 19/2021/TT-BTC 호 및 기타 관련 문서를 포함한 여러 조세행정 안내 문서를 대체·통합합니다.

1. 위험관리 목적의 납세자 분류 체계 도입

시행규칙 89 는 위험관리 접근방식에 따른 조세행정의 법적 체계를 보완하고, 납세자 분류, 준수 수준 평가 및 각 납세자 그룹에 적합한 관리조치를 적용할 근거를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관리 접근방식에 따른 조세행정을 위해 납세자를 세분화하는 체계가 최초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사업 규모, 업종, 준수 이력 및 세무위험 수준 등의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세무위험이 높은 업종에 대한 관리 강화: 시행규칙 89 는 과세당국이 다음을 포함하여 세무위험이 높은 일부 업종 또는 사업모델을 별도로 분류·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전자상거래

- 디지털 플랫폼 사업
 - 국경 간 거래
 - 과세당국이 수시로 정하는 기타 업종
- 준수 수준 및 세무위험 평가체계 구축: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데이터와 정보를 기반으로 다음 사항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합니다.
 - 세무등록·신고·납부 현황
 - 조세채무 이력
 - 세무조사 결과
 - 과세당국 결정의 준수 여부
 -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세금 환급·면제·감면 및 납세의무 확정 관련 위험지표
 - 준수·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관리조치 적용: 평가 결과에 따라 납세자를 서로 다른 준수·위험 등급으로 분류하고, 준수지원 및 우선 체계에서부터 고위험 사례에 대한 감독·조사 또는 강화된 관리조치까지 적절한 조치를 적용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전통적인 조세행정 모델에서 데이터, 준수 수준 및 납세자 위험평가에 기반한 관리로의 전환을 반영합니다. 기업의 준수 수준은 세무조사 빈도뿐 아니라 과세당국의 지원 또는 우선 체계 이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세무 분야 전자거래 체계의 정비

시행규칙 89 는 세무 분야 전산거래 체계를 정비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산세무 거래 시 전자신원확인 계정 적용: 납세자는 전자신원확인 및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신원확인 계정 또는 적절한 경우 과세당국이 부여한 전산세무 거래계정을 통해 전산세무 거래를 수행합니다. 이는 전산세무 거래에서 전자신원확인 계정 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전자서류 인증방법의 확대

종전 전산거래는 주로 디지털서명 또는 디지털 인증서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시행규칙 89 에 따라 납세자는 다음 방법으로 전자서류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서명(공인 디지털서명 또는 공무용 전용 디지털서명 포함)
- 전자 인증코드
- 생체인증
- 규정에 따른 기타 전자인증 방법

동시에 과세당국과 거래하기 위해 납세자가 디지털서명 또는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를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이 개정되어 다른 형태의 전자인증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과세당국이 발행한 전자문서에 관한 납세자 책임의 명확화

종전 규정상 납세자는 과세당국의 통지와 전자문서를 수신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시행규칙 89 는 납세자가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과세당국이 전송한 내용을 수신·확인하고 그에 따라 조치할 책임을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문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는 시점은 시스템이 전자세무 거래계정 또는 등록 이메일 주소로 성공적으로 전달되었다고 기록한 시점입니다.

- 서류 접수 및 제출시점 기록 체계의 변경

- 종전 규정상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제출한 전자서류의 완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한 후 전자세금 신고서 접수통지서를 발행하고 이어서 전자세금 신고서 수리통지서를 발행하였습니다.

202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규칙 89 에 따라 납세자의 전자서류 제출이 확인되는 시점은 전자세무서류 접수통지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조세행정 정보시스템이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수신한 시점으로 결정됩니다.

- 시행규칙 89 는 과세당국의 전자서류 접수·미접수 통지기한도 추가합니다. 대부분의 세무서류는 늦어도 1 영업일 이내, 세금 환급·면제·감면 서류 및 이와 유사한 일부 서류는 늦어도 3 영업일 이내에 회신해야 합니다.
- 과세당국은 이 접수시점을 신고기한, 지연신고 기간 및 세무서류 처리기한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3. 세금 신고·납부 및 납세의무 배분 지침의 정비

2026 년 7 월 1 일 이전에 적용된 조세행정 규정(2019 년 6 월 13 일자 조세행정법 제 38/2019/QH14 호, 정부의 2020 년 10 월 19 일자 시행령 제 126/2020/ND-CP 호(“시행령 126”) 및 시행규칙 80 포함)에서는 세금 신고·납부 및 납세의무 배분 규정이 여러 단계의 문서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시행규칙 89 는 기존 규정을 바탕으로 각 세목별 서류, 신고장소, 신고방법 및 납세의무 배분을 보다 상세히 안내하여 시행지침의 상당 부분을 하나의 통합 문서로 정리합니다.

3.1. VAT 신고 및 배분 규정의 개정

시행규칙 89 는 VAT 신고기간 결정과 지역 간 VAT 의무 배분에 관한 일부 규정을 보완하고 상세히 안내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사업개시 기업의 VAT 신고기간 결정 규정 조정

종전 규정상 신설기업은 분기별로 VAT 를 신고하고, 12 개월의 완전한 영업기간이 지난 후에야 직전 역년의 매출을 기준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직전 역년 매출이 500 억 VND 를 초과하면 월별 신고를 해야 하고, 500 억 VND 이하이면 분기별 신고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시행규칙 89 는 첫 영업연도 매출이 500 억 VND 를 초과하는 경우(영업기간이 12 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사업개시 연도의 바로 다음 역년부터 월별로 VAT 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첫해 매출이 500 억 VND 이하인 경우 기업은 분기별 신고를 계속하고, 12 개월의 완전한 영업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기간을 다시 결정합니다.

- 과세당국의 신고기간 변경신청 접수체계 도입

월별로 신고 중인 납세자가 분기별 신고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 과세당국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89 는 과세당국이 신고기간 변경신청의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지하는 체계를 추가합니다. 납세자는 과세당국이 규정에 따른 승인통지를 발행한 후에만 분기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후불제 통신서비스의 VAT 배분에 관한 추가 규정

VAT 배분원칙은 대체로 변경되지 않았으나, 시행규칙 89 는 후불제 통신서비스 사업의 매출 배분 기준과 관련 지역에서의 신고·납부 책임을 포함한 VAT 배분 지침을 추가합니다.

3.2. CIT, 개인소득세("PIT") 및 외국인계약자세("FCT") 신고지침 개정

- CIT:

지역 간 CIT 신고·납부·배분 규정은 대체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 89 는 주로 시행지침을 하나의 통합 문서로 체계화하고 갱신합니다.

- PIT:

- 시행규칙 89 는 원천징수한 PIT 의 분기별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추가합니다.
- 또한 다음 사항의 서류와 신고절차를 보다 상세히 규정합니다.

조직과 개인이 타인을 대신하여 원천징수·신고하는 PIT

납세자가 과세당국에 직접 신고하는 PIT

- 종업원주식소유제도("ESOP")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 등 일부 특정 사례

- FCT:

시행규칙 89 는 외국인계약자세(매출에 직접 계산하는 VAT 및 과세매출에 일정 비율을 적용한 CIT 로 구성)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외국인계약자를 대신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관한 시행규칙 제 156/2013/TT-BTC 호의 종전 지침을 승계하고 체계화합니다.

이에 따라:

- 세금 신고의무는 지급이 발생할 때마다 이행합니다.
- 시행규칙 89 는 계약자 계약 완료 시 세무정산 요건도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정산은 계약 수행기간 중 신고·납부한 세액을 변경하는 조정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시행규칙 89 의 규정은 CIT, PIT 및 FCT 납세의무를 중대하게 변경하지는 않지만, 각 세목의 서류·신고장소·신고절차 요건을 체계화하고 보다 상세히 규정합니다.

3.3. 외국 공급자 및 디지털 플랫폼 사업활동의 납세의무에 관한 추가 지침

시행규칙 89 는 수권자를 통해 이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베트남에서 직접 세금을 신고하는 외국 공급자의 세무등록·신고·납부 절차를 통합하고 보다 상세히 안내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기타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서류에 관한 지침을 추가합니다.

아울러 다음 경우 타인을 대신하여 납세의무를 원천징수·신고·납부하기 위한 서류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합니다.

- 외국 공급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베트남 내 사업 조직
- 온라인 주문·결제 기능을 갖추고 플랫폼에서 사업하는 가구사업자와 개인을 대신하여 세금을 원천징수·신고·납부하는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

시행규칙 89 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중앙집중식 관리체계와 조세행정 정보시스템을 통해 타인을 대신해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관련 지역에 자동 배분하는 원칙도 도입합니다.

3.4. 일부 경우 수정신고를 대체하는 소명제도 도입

시행규칙 89 와 시행령 252 는 서류가 조사·검사된 후 또는 법정 수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납세자가 오류를 발견한 경우의 처리체계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합니다.

- 세금 신고서가 이미 조사·검사된 경우에도 납세자는 관할기관의 결론 또는 처분결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소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정은 이미 발행된 결론 또는 처분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납세자가 납부세액을 증가시키거나 면제·감면·환급·공제 세액을 감소시키는 오류를 발견했으나 해당 신고서의 제출기한이 5 년 넘게 지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고 과세당국에 소명서류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소명서류를 검토하여 승인 또는 불승인 통지를 발행하며, 해당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조세행정상 행정위반도 처리합니다.

4. VAT 환급서류 관리체계의 정비

- 환급서류 분류: 세금 환급서류의 분류원칙은 현행 규정과 대체로 동일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89 는 해산 또는 파산 시 기업·조직의 미공제 매입 VAT 관련 환급서류를 조세행정상 고위험으로 판단하여 환급 전 조사 대상으로 정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 환급서류 처리: 시행규칙 89 는 환급서류 처리 과정의 위험관리 조치 적용을 보완·안내합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데이터를 대조하고, 소명 또는 추가서류를 요구하거나, 청구된 환급액 중 일부를 고위험으로 판단하여 환급 전 조사 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환급 후 조사: 시행규칙 89 는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선환급 처리 대상인 서류에 대해 환급결정 발행일로부터 5 년의 환급 후 조사기간을 최초로 명시합니다. 종전에는 이러한 기간이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5. 세무조사 규정의 개정

현행 조세행정 법체계는 종전과 달리 별도의 세무검사 (tax inspection) 활동을 더 이상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는 과세당국의 핵심 관리수단이 되었으며, 각 구체적 사례에 적용되는 권한·순서·절차 및 처리체계에 관한 세부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5.1. 과세당국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세무서류 조사의 강화

- 과세당국 사무실에서 세무서류를 조사하는 원칙은 대체로 변경되지 않았으며, 고위험으로 분류된 세무서류에 위험관리 기준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 다만 시행규칙 89 는 과세당국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조사의 순서와 절차를 보완하고 보다 명확히 규정합니다. 종전에는 과세당국이 주로 세무서류를 검토한 후 납세자에게 소명 및 추가 정보·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통지를 발행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서류의 정확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당국이 세액을 결정하거나 납세자 사업장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결정을 발행하였습니다.

시행규칙 89 는 서류 검토, 조세행정 데이터 분석 및 납세자의 소명을 통해 위반 징후를 식별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과세당국 사무실에서 조사결정을 발행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 사무실 조사는 더 이상 서류 소명요구 단계에 한정되지 않고 별도의 조사결과와 조사조서로 구성된 조사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 또한 조사기간은 조사결정 발행일로부터 10 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조사 결과 위반을 확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과세당국은 조세행정법에 따라 위반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89 는 조사결과와 조사조서를 통한 과세당국 사무실의 조사절차를 최초로 규정합니다. 이는 과세당국 사무실의 서류 검토가 종전처럼 소명요구에만 한정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5.2. 납세자 사업장에서의 세무조사에 관한 추가 규정

- 시행규칙 89 는 검사기관으로의 서류 이관체계를 추가합니다. 복잡하거나 광범위하거나 고위험인 사건 또는 세법 위반 징후가 있어 검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과세당국은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건의하기 위해 검사기관에 서류를 이관할 수 있습니다.
- 시행규칙 89 는 이미 발행되었으나 공표되기 전인 조사결정을 과세당국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최초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관할기관의 검사·조사 활동과 중복되거나 조사를 계속할 근거가 더 이상 없는 경우입니다.
- 시행규칙 89 는 납세자가 조사조서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규정을 추가합니다.

납세자가 조사조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규정에 따라 조사팀장과 읍·면·동급 기관 대표 또는 증인의 서명으로 조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시행규칙 89 는 재조사의 권한·순서·절차 및 제척기간을 규정하며, 제척기간은 조사결론 또는 조세행정상 행정위반 처분결정의 서명일로부터 2 년입니다. 재조사는 원 조사를 수행한 과세당국의 직상급 과세당국이 수행합니다. 종전 조세행정 규정은 조사활동 내 재조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었고, 재조사 규정은 주로 검사활동에 적용되며 일부 경우 제척기간은 1 년이었습니다.

5.3. 전자적 방식의 세무조사를 위한 추가 법적 근거

- 시행규칙 89 는 전자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원격 조사 규정을 추가하며, 과세당국 사무실 조사와 납세자 사업장 조사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소명과 서류의 제공, 정보교환, 조서 작성 및 처분문서 발행을 전자적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전자데이터만으로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과세당국은 규정에 따라 납세자 사업장에서의 직접 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의 조세행정에 관한 정부의 2026 년 6 월 30 일자 시행령 제 255/2026/ND-CP 호(2026 년 7 월 1 일 시행)

베트남 정부는 최근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의 조세행정에 관한 시행령 제 255/2026/ND-CP 호(“시행령 255” 또는 “시행령”)를 공포하여 시행령 제 132/2020/ND-CP 호 및 제 20/2025/ND-CP 호를 대체하였습니다.

1. 일부 정의 및 문서화 요건의 명확화

시행령 255 는 최종모기업 개념과 국제조세조약의 적용 등을 포함하여 조세행정법 및 관련 법체계에 보다 명확히 근거함으로써 조세행정과 준수에 관한 일부 규정을 보완·명확히 합니다. 동시에 이전가격(“TP”) 문서는 법인소득세(“CIT”) 확정신고 기한까지 작성하고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는 요건을 재확인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현행 규정과 대체로 동일하지만, 보다 명확한 문구는 TP 문서의 적시 작성·보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2. 비교가능성 분석에 사용하는 데이터 출처의 우선순위

시행령 255 의 중요한 변경사항은 비교가능성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 출처의 선정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 것입니다.

- 증권거래소, 재화·용역 거래소, 국가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공개된 공식 데이터 출처를 포함한 공개 또는 공식 데이터 출처
-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 과세당국의 데이터베이스

이 우선순위는 투명하고 독립적이며 검증 가능한 데이터 출처의 사용을 지향하며, 적절히 적용할 경우 TP 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합니다.

3. TP 문서 작성면제 체계의 조정

시행령 255 는 다음을 포함하여 TP 문서 작성면제 요건을 조정합니다.

- 정해진 수익성 기준에 따른 면제에 적용되는 매출 기준액을 일부 특정 경우 2 천억 VND 미만에서 5 천억 VND 미만으로 인상, 그리고
- 이 체계에 따른 면제 적격성을 판단할 때 “단순 기능”과 같은 정성적 기준을 삭제

이러한 변경은 실무상 해석 차이를 줄이고 문서작성 면제 적격성 평가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4. 국가별보고서(“CbCR”) 관련 개정

일반 요건

시행령 255 는 베트남의 CbCR 적용체계를 다음과 같이 더욱 명확히 합니다.

- 그룹 연결매출 기준액은 종전 18 조 VND 를 대체하여 7 억 5 천만 EUR 상당액으로 결정됩니다.
- 이 기준액은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중앙은행 환율에 따른 구체적인 외화환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 베트남 기업이 해외에 본사를 둔 그룹에 속하고 그룹 CbCR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최종모기업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2 개월 이내에 XML 형식으로 CbCR 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지정 납세자는 늦어도 최종모기업 보고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CbCR 제출법인을 통지하는 서식 제 01/TB-BCLN 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식 제 01/TB-BCLN 호는 일회성 통지체계를 적용합니다. 이미 통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납세자는 변경 발생일부터 90 일 이내에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 CbCR 데이터는 납세의무를 조정하거나 특수관계자 거래가격을 추계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에서의 CbCR 제출의무

시행령 255 는 최종모기업이 해외에 있는 베트남 기업의 베트남 내 CbCR 제출의무 발생 여부를 다음과 같이 보다 상세히 규정합니다.

- 최종모기업 또는 지정법인이 해외에서 CbCR 을 제출한 경우: 그룹의 최종모기업 또는 지정법인이 해외에서 CbCR 을 제출하고 베트남과의 자동정보교환 요건이 충족되면 베트남에서 CbCR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정보교환 체계가 실효적이지 않은 경우: 정보교환 협정이 있음에도 외국 국가·지역이 베트남과 CbCR 정보를 교환하지 않으면 베트남에서 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
- 적용 기준액의 차이: 매출 기준액, 통화환산 또는 매출 결정방식의 차이로 최종모기업이 거주지 국가·지역에서 CbCR 제출을 면제받는 경우 베트남에서도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베트남 CbCR 제출요건의 적용조건: 베트남이 CbCR 정보의 기밀성, 일관성 및 적절한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과세당국이 이러한 조건을 공식 발표한 경우에만 베트남 내 CbCR 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

시행령 132 가 현지 제출의무를 일반적인 수준에서만 언급한 반면, 새로운 규정은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베트남 내 CbCR 제출의무 발생 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정보교환 체계의 실효성과 운영상태, 해외 CbCR 제출구조 및 관련 통지의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기업은 내부 준수절차를 갱신하고 그룹 세무기능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물품의 조세행정에 관한 재무부의 2026 년 6 월 30 일자 시행규칙 제 86/2026/TT-BTC 호

2026 년 6 월 30 일 공포되어 202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시행규칙 제 86/2026/TT-BTC 호는 수출입 물품의 조세행정을 규정합니다. 동 시행규칙은 시행규칙 제 06/2021/TT-BTC 호를 대체하고, 시행규칙 제 38/2015/TT-BTC 호, 제 39/2018/TT-BTC 호, 제 121/2025/TT-BTC 호 및 시행령 제 134/2016/ND-CP 호, 제 18/2021/ND-CP 호, 제 182/2025/ND-CP 호 등 여러 법률문서에 분산되어 있던 규정을 체계화합니다. 시행규칙 86 은 세금 면제·감면·환급·불징수에 관한 모든 규정, 서류 및 서식을 포괄하는 통합 체계입니다.

시행규칙 제 86/2026/TT-BTC 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전자신고 촉진: 납세자는 부록 II 의 표준화된 기준(25 개 서식 및 73 개 디지털 문서)을 사용하여 관세 전자데이터 처리시스템을 통해 납세의무를 신고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특정 기준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디지털 서명된 문서 사본을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장애 시에는 종이 세무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1.2. 연계된 문서의 제출면제: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싱글윈도우, 국가공공서비스포털 또는 상호 연계된 국가·전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미 이용 가능한 문서는 세관에 실물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납세자는 세관이 직접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만 제공하면 됩니다.

1.3. 세액결정 절차 간소화: 세관신고인, 수권대리인, 보증인 또는 신고인을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자에게 정식 세액결정서를 발행하기 전에 법적 근거, 계산방법, 세액 상세 및 기한을 기재한 사전 서면통지를 발송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합니다.

1.4. 통관 후 조정에 따른 납부기한: HS 코드·세율의 변경(분석·분류·검사 후), 관세가격 변경, 로열티·라이선스 비용 발생 및 확정가격 결정 시 기타 납부액과 관련된 수정신고와 세금 납부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정확한 납부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분석·분류·검사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 기한은 세관이 전자시스템을 통해 수정신고를 요구한 날부터 5 영업일입니다(종전에는 납세자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5 영업일).

1.5. 관세 세액결정 사례의 추가 납부기한

분석·분류·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 또는 추가세액 납부를 하지 않으면, 결정세액의 납부기한은 세관이 전자시스템에서 수정신고를 요구한 날입니다.

세 가지 특정 조정사항(로열티, 라이선스 비용, 후속 재판매·처분 수익)에 대해 납세자가 차액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결정세액 납부기한은 납부증빙 및 관련 문서에 반영된 바에 따라 납세자가 해당 금액을 확정할 날입니다.

확정가격이 있는 물품에 대해 납세자가 차액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결정세액 납부기한은 확정가격이 결정된 시점입니다.

세무등록에 관한 재무부의 2026 년 6 월 30 일자 시행규칙 제 90/2026/TT-BTC 호

2026 년 6 월 30 일 공포되어 202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시행규칙 제 90/2026/TT-BTC 호는 신 조세행정법에 따른 세무등록을 안내합니다. 이 문서는 데이터 활용, 전자신원확인, 시스템 연계 및 디지털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 관리에 중점을 둔 디지털 조세행정으로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시행규칙 90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직접등록 대상 개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사업하는 외국 조직과 거주 개인을 세무등록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또한 타인을 대신하여 세금을 원천징수·납부하는 기업·조직·개인의 경우를 명확히 합니다. 아울러 결의 제 107/2023/QH15 호 및 시행령 제 236/2025/ND-CP 호의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정에 맞춰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납세자를 직접 세무등록 대상에 추가합니다.

2.2. 납세자번호(“TIN”) 구조 정비: 독립 조직,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추가 CIT 를 신고하는 기업 및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에 개인식별번호가 없는 일부 개인에게 10 자리 TIN 을 발급합니다. 종속단위 및 법률에서 정한 기타 대상에는 13 자리 TIN 을 부여합니다.

2.3. 법적상태가 갱신되지 않은 해산 사례의 처리체계: 제 15 조에 따라 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해산을 위한 납세의무 이행통지를 받았으나 180 일이 지나도록 과세당국이 사업자등록기관으로부터 완료

데이터를 받지 못하면, 과세당국은 해당 기관의 법적상태를 “해산”으로 갱신하도록 사업자등록기관에 공식 요청합니다. 이는 세무등록 신청시스템에서 TIN 을 말소하는 공식 근거가 됩니다.

경과규정(제 37 조): 2026 년 7 월 1 일 이전에 제출한 세무등록, 정보변경, 일시중지, 말소 또는 TIN 복구 신청은 제출 당시 유효한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시행일 전에 발급된 TIN 은 계속 유효합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 가구 및 가구.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TIN 을 대체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증빙에 관한 정부의 2026 년 6 월 30 일자 시행령 제 254/2026/ND-CP 호
및 재무부의 2026 년 6 월 30 일자 시행규칙 제 91/2026/TT-BTC 호**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증빙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다음 법률문서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 조세행정법 제 108/2025/QH15 호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증빙 관련 일부 조항의 세부지침과 시행조치를 규정하는 정부의 2026 년 6 월 30 일자 시행령 제 254/2026/ND-CP 호
- 조세행정법 및 시행령 제 254/2026/ND-CP 호의 일부 조항을 안내하는 재무부의 2026 년 6 월 30 일자 시행규칙 제 91/2026/TT-BTC 호

시행령 254 와 시행규칙 91 은 모두 202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시점

1.1 서비스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시점 규정 확대

종전 규정에서는 지정된 5 개 서비스 유형의 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금 또는 선급금을 수령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새 규정에서는 서비스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취한 보증금만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규정에 따라 회계, 감사, 재무·세무 자문, 평가, 기술조사·설계, 건설감리 자문 및 건설투자 프로젝트 자문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 제공자는 용역 제공 전 또는 제공 중 대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금액이 단순한 이행보증금이 아닌 한 대금 수령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1.2 대량 거래 서비스 중 정산기준 발행이 가능한 서비스 목록 확대

기존 원칙과 기한(다음 달 7 일까지 또는 합의된 정산기간 종료 후 7 일 이내)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규정은 암호자산 서비스, 탄소거래 지원서비스, 전자신문 광고서비스, 디지털 기술서비스,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통신·IT 플랫폼을 통한 지급중개서비스, 보험서비스, 보안서비스 등을 추가하여 사후 정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재화·용역 목록을 확대합니다.

1.3. 야간근로시간 중 발생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새로운 규정

자동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이 없는 사업자는 법정 야간근로시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해 다음 영업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기발행 세금계산서의 조정 및 대체에 관한 새로운 규정

법적 근거: 시행규칙 제 91/2026/TT-BTC 호 제 10 조 - 기발행 전자세금계산서의 처리

2.1 세금계산서 재발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확대(서식 제 04/SS-HDDT 호 통지만 필요)

중대한 오류(납세자번호, 세금계산서 금액, VAT 세율, VAT 금액 또는 재화·용역 관련 오류) 이외의 오류는 대체 또는 조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판매자는 서식 제 04/SS-HDDT 호로 통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금액의 문자표기 오류에도 적용됩니다.

2.2 대체 세금계산서만 허용되고 조정 세금계산서는 허용되지 않는 두 가지 추가 사례

다음 세금계산서에 오류가 있으면 조정이 아닌 대체 발행을 해야 합니다.

-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세금계산서(POS 세금계산서), 그리고
- 소유권 등록대상 재화 관련 세금계산서

2.3. 이 밖에 시행령 254 는 구매자가 개인 소비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안내합니다.

개인 구매자가 성명, 주소 또는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에 다음 문구를 명확히 “소비자에게 판매”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어떠한 기업도 세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납세기한 연장에 관한 정부의 2026 년 6 월 27 일자 시행령 제 245/2026/ND-CP 호

정부는 2026 년 6 월 27 일 2026 년도 VAT, CIT, PIT 및 토지임대료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시행령 제 245/2026/ND-CP 호를 공포하였습니다.

시행령 제 245/2026/ND-CP 호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기간

시행령 제 245/2026/ND-CP 호는 2026 년 6 월 27 일부터 2026 년 12 월 30 일까지 시행됩니다.

2. 적용대상

- 시행령 첨부 부록 I 에 정한 경제부문 및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 조직, 가구·개인사업자
- 소기업 및 영세기업

3. 납세기한 연장

(i) VAT(월별 및 분기별 과세기간)

- 2026 년 5 월부터 9 월까지 및 2026 년 2 분기·3 분기의 납부 VAT 에 최대 5 개월의 연장이 적용됩니다.

(ii) PIT(기업이 아닌 가구·개인사업자가 납부할 경우)

- + 2026 년 5 월부터 9 월까지(2026 년 2 분기 및 3 분기) 가구·개인사업자가 납부할 PIT 에 최대 5 개월의 연장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026 년 5 월 과세기간: 2026 년 11 월 20 일까지
- + 2026 년 6 월, 7 월, 8 월 및 9 월 과세기간: 2026 년 12 월 21 일까지
- + 2026 년 2 분기: 2026 년 11 월 2 일까지
- + 2026 년 3 분기: 2026 년 12 월 30 일까지

(iii) CIT(중간예납)

- CIT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이 연장됩니다.

+ 2026 년 2 분기: 최대 3 개월, 2026 년 11 월 2 일까지

+ 2026 년 3 분기: 최대 2 개월, 2026 년 12 월 30 일까지

(iv) 2026 년에 발생하는 토지임대료

- 2026 년 납부 토지임대료의 50%(1 차 납부기간의 토지임대료)에 5 개월의 연장이 적용되며, 연장된 납부기한은 2026 년 11 월 2 일까지입니다.

4. 연장신청서 제출

납세자는 연장 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세금과 토지임대료에 대해 직접 관할하는 과세당국에 연장신청서 1 부를 일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2026 년 11 월 2 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 95/2026/TT-BTC 호 - 조세조약, MAP 및 APA 에 관한 새로운 지침

2026 년 7 월 1 일 재무부는 이중과세방지 조세조약, 상호합의절차("MAP") 및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의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APA")의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규칙 제 95/2026/TT-BTC 호("시행규칙 95")를 공포하였습니다.

시행규칙 95 는 202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되며, 조세조약 시행에 관한 시행규칙 제 205/2013/TT-BTC 호와 APA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제 45/2021/TT-BTC 호를 대체합니다. 동 시행규칙은 5 개 장, 84 개 조로 구성되며 정보교환과 조세징수 지원에 관한 지침도 제공합니다.

1. 조세조약 적용 관련 개정사항

시행규칙 95 는 시행규칙 205 의 종전 지침을 대부분 승계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개정사항과 명확화 내용을 도입합니다.

MAP 및 APA 서류의 전자제출

MAP·APA 신청서, 소명, 보충정보·문서 및 처리결과 통지는 원칙적으로 전자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가 너무 크거나 특수 형식을 사용하거나 전자시스템의 기술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이 제출도 가능합니다.

조약 혜택 적용대상 개인·법인의 명확화

시행규칙 95 는 베트남 거주자, 해당 조약상대국 거주자 또는 양국 거주자인 개인과 법인에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양국이 서로 다른 과세연도 기간을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중거주자의 세법상 거주지와 납세의무 결정에 관한 추가 지침도 제공합니다.

조약 혜택 적용요건 강화

시행규칙 95 는 조약 혜택을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을 더욱 명확히 합니다. 특히 조세조약이 양 체약국에서 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기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화하고, 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보지 않는 경우를 보다 상세히 안내합니다.

부동산 정의의 확대

조약 목적상 부동산의 정의가 토지법, 부동산사업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서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자산까지 확대됩니다. 여기에는 토지사용권 가치, 토지임대계약상 권리 및 장래 형성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의 고정사업장

2025 년 법인소득세법에 따라, 시행규칙 95 는 외국기업이 베트남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사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정해진 요건에 따라 해당 플랫폼을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배당, 이자, 사용료 및 기술용역료에 대한 조약세율

시행규칙 95 는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해당 조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 해당 소득에 적용하는 베트남 세율이 적용 조세조약에서 정한 최고세율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2. 자산의 직접·간접 양도에 관한 새로운 지침

시행규칙 95 는 직접·간접 자본양도를 포함한 자산양도소득의 납세의무 결정 지침을 보완합니다.

이를 위해 직접 또는 간접 양도되는 기업의 총 잔존자산가액 대비 부동산 잔존가액의 비율은 다음 세 시점 비율의 단순평균으로 결정합니다.

- 자산 양도일
- 양도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개시일, 그리고
- 양도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

부동산 가액은 양도연도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종료일 현재 기업의 감사받은 재무상태표 및 양도일 현재 기업이 작성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3. 정보교환 및 조세징수 지원

시행규칙 95 는 베트남 세무당국과 조약상대국 관할당국 간 세무정보 교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도입합니다.

규정은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조세조약에 따른 정보교환 및 수집
- 국내 정보수집 및 검증
- 세무정보 자동교환, 그리고
- 교환정보의 비밀유지 및 허용된 사용

시행규칙 95 는 베트남과 조약상대국 간 조세징수 지원 규정도 도입합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과세당국은 베트남에서 발생한 조세채무를 우선하면서 조약상대국의 미납세금 통지 및 추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세채무가 분쟁 중이거나 요청된 조치가 베트남 법률 또는 행정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지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더욱 상세한 상호합의절차(“MAP”) 체계

시행규칙 95 는 OECD MAP 지침과 실무경험을 고려하여 종전 결정 제 2049/QD-TCT 호에 규정된 MAP 절차를 법제화하고 더욱 발전시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MAP 신청 거부 사유

베트남 관할당국은 신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MAP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범위를 벗어난 경우
- 적용기한 후 제출된 경우
- 납세자가 요구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이고 공식 세무조사 조서가 아직 발행되지 않은 사안과 관련된 경우
- MAP 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징후가 있는 경우, 또는
- 적용 조세조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와 관련된 경우

보다 명확한 MAP 처리절차

시행규칙 95 는 신청서의 접수·검토부터 분석, 입장서 교환, 상대 관할당국과의 협상, 납세자 확인 및 최종 시행까지 MAP 절차를 규정합니다.

베트남이 상대 체약국과 협의하지 않고도 해당 조약에 따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베트남 세무당국은 사건을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의 MAP 결과 수락

관할당국이 공동합의에 도달하면 납세자에게 제안된 합의의 수락 또는 거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합니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특정 쟁점이나 과세기간에 대한 MAP 결과의 일부만 수락할 수 없습니다.

MAP 합의의 시행 결과 기납부 세금, 지연이자 또는 과태료가 최종 납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채무를 조정하고 조세행정 규정에 따라 발생한 과오납금을 처리합니다.

5.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APA”)의 개정

시행규칙 95 는 종전 시행령 제 126/2020/ND-CP 호 및 시행규칙 제 45/2021/TT-BTC 호가 규율하던 APA 체계도 개정합니다.

양자·다자 APA 의 명확화

시행규칙 95 는 양자 및 다자 APA 가 대상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 산정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관할 과세당국 간 체결하는 합의임을 명확히 합니다.

선택적 사전상담

납세자는 APA 신청서를 정식 제출하기 전에 과세당국과 예비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담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APA 전자신청

시행규칙 95 는 전자제출 전환에 맞춰 종이 서류의 제출부수에 관한 종전 요건을 삭제합니다. APA 신청에 필요한 상세정보는 서식 제 01/APA-DN 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속적 준수요건 강화

납세자는 APA 의 핵심 전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을 과세당국에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APA 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규칙 95 는 납세자가 APA 이행 모니터링에 필요한 관련 정보와 함께 연간 APA 준수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APA 연장

APA 는 최대 3 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제안된 연장기간 동안독립기업 간 정상가격 범위 또는 이익률이이익률이 APA 에 적용되는 핵심 전제조건과 계속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최대 5 개 과세연도의 APA 신청기간

시행규칙 95 의 중요한 변경사항은 납세자가 APA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 또는 바로 다음 과세연도부터 시작하여 연속 최대 5 개 과세연도에 대해 APA 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체결된 APA 의 최대 유효기간을 3 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APA 협상절차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결된 APA 가 실질적으로 최대 3 년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6. 경과규정

시행규칙 95 는 2026 년 7 월 1 일부터 적용됩니다.

시행규칙 95 의 시행일 전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제안된 APA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APA 신청은 조세행정법 제 108/2025/QH15 호 및 시행규칙 95 에 따라 계속 처리됩니다.

전반적으로 시행규칙 95 는 특히 조약 혜택, 간접양도, 정보교환, MAP 및 APA 절차와 관련하여 베트남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체계를 제공합니다. 중요한 국경 간 거래 또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은 새로운 요건을 검토하고 기존 조약 혜택 신청, 이전가격 관련 체계 및 APA·MAP 절차의 갱신 필요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Official letters

적격국내최저한세(“QDMTT”)의 적격 급여비용에 관한 2026 년 4 월 28 일자 공문 제 2697/CT-CS 호

2026 년 4 월 28 일 베트남 세무당국은 QDMTT 규정상 실질기반소득 제외액 계산을 위한 적격 급여비용을 안내하는 공문 제 2697/CT-CS 호(“공문 2697”)를 발행하였습니다.

시행령 제 236/2025/ND-CP 호에 따라 적격 급여비용에는 일반적으로 급여·임금, 사용자 부담 급여세 및 사회보험료, 수당, 상여금, 건강보험료, 연금기여금, 주식기준보상 및 적격 근로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기타 혜택이 포함됩니다.

특히 공문 2697 은 시행령 제 236/2025/ND-CP 호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현물포상과 근로자의 자녀·가족·친족을 위해 제공하는 수당 또는 복리후생도 적격 급여비용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적격 비용은 QDMTT 목적상 급여비용 공제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출가공기업("EPE")에 적용되는 세관 조사·감독 요건에 관한 2026 년 8 월 7 일자 공문 제 20010/CHQ-GSQL 호

2026 년 8 월 7 일 관세당국은 비관세구역으로 운영되는 EPE 의 세관 조사·감독 요건과 조세정책 적용을 안내하는 공문 제 20010/CHQ-GSQL 호("공문 20010")를 발행하였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EPE 는 비관세구역에 적용되는 조세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 물리적 분리요건 및 기타 세관감독 요건을 포함한 정해진 세관 조사·감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공문 20010 은 EPE 가 정해진 세관 조사·감독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면 비관세구역에 적용되는 조세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세관은 각 사건의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EPE 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구체적인 기간을 확정하여 적절한 세무·관세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장기 결손 저마진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에 관한 2026 년 3 월 31 일자 공문 제 1927/CT-KTr 호

2026 년 3 월 31 일 베트남 세무당국은 연속 결손 또는 낮은 이익률을 신고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와 조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공문 제 1927/CT-KTr 호(“공문 1927”)를 발행하였습니다. 수년간 결손을 신고하면서 사업을 계속 확장하거나 자본을 늘리는 기업은 중요한 세무위험 지표로 간주되어 표적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3 년과 2024 년에 연속 결손을 신고한 매출 1 조 VND 이상 기업은 2025 년 CIT 확정신고 데이터를 기준으로 추가 위험평가를 받습니다.

세무조사 시 과세당국은 매출·비용·이익의 합리성, 매출 및 VAT 인식, 매입·매출 VAT,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중점을 두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또한정상가격원칙과의 일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그룹 내 이자, 관리·기술용역료, 사용료·프랜차이즈 수수료 및 특수관계자 간 매매가격 등 특수관계자 거래에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따라서 장기 결손 또는 저마진 기업은 2026 년에 세무심사가 강화될 것에 대비하여, 특히 중요한 비용과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한 세무상 입장 및 증빙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 외주용역 비용의 세무처리에 관한 2026 년 6 월 5 일자 공문 제 3705/CT-CS 호

2026 년 6 월 5 일 베트남 세무당국은 근로자 외주용역활동의 세무 및 세금계산서 처리를 안내하는 공문 제 3705/CT-CS 호(“공문 3705”)를 발행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세무처리를 평가할 때 과세당국은 적용되는 CIT·VAT 규정뿐 아니라 근로자 외주용역사용이 허용되는 직무 목록 등 시행령 제 145/2020/ND-CP 호의 근로자 외주용역 사용 요건과 결정 제 27/2018/QD-TTg 호 및 2025 년 11 월 15 일부터는 결정 제 36/2025/QD-TTg 호에 따른 사업활동 분류도 참조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외주용역약정이 적용 노동법 및 전문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관련 CIT 비용공제와 매입 VAT 공제·환급이 과세당국에 의해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로자 외주용역 사용약정을 이용하는 기업은 적절한 세금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유지하는 것과 함께 외주 직무의 성격 및 관련 사업활동도 검토해야 합니다.

수출물품 VAT 환급에 관한 2026 년 6 월 30 일자 공문 제 4413/CT-CS 호

2026 년 6 월 30 일 베트남 세무당국은

수출물품의 VAT 환급을 안내하는 공문 제 4413/CT-CS 호(“공문 4413”)를 발행하였습니다.

해당 공문 사례에서 기업은 세관코드 A12(베트남 국내 생산에 사용할 원재료·기계·설비 수입)로 물품을 수입하고 코드 B11(일반 상업수출 또는 판매 목적 수출)로 물품을 수출하면서 세관신고서에 관련 수출제품 코드와 수입 원재료 코드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세관절차는 수출품 생산용 원재료 수입이 아니라 통상적인 A12(베트남 국내 생산에 사용할 원재료·기계·설비 수입)로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세무당국은 세관코드 A12 로 수입한 원재료가 VAT 규정상 수출물품 관련 VAT 환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제조기업은 VAT 환급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관신고 유형과 수입 원재료·수출제품 관련 정보를 적절히 신고하고 실제 거래의 성격과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

A12 - 생산을 위한 사업용 수입 → 국내 생산을 위한 일반 수입

베트남 기업이 다음 물품을 베트남 내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할 때 적용합니다.

- 원재료 및 부자재

- 부품
- 생산용 기계·설비
- 투자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수입 물품

예를 들어, 일반 제조기업이 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베트남 내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한다면 보통 A12 를 사용합니다.

다른 코드와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	용도
A11	소비·판매 목적의 일반 상업수입
A12	베트남 국내 생산에 사용할 원재료·기계·설비 수입
A41	수입권을 행사하여 생산과정 없이 베트남에서 직접 판매
E31	수출제품 생산용 원재료 수입으로서 수입관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11/E13	수출가공기업(EPE/DNCX)의 원재료 또는 기타 물품 수입

특히 A12 로 수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수입관세 또는 수입부가가치세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입관세와 수입 VAT 가 부과되며, 투자우대·면세목록 등 별도의 면제요건을 충족해야 면세가 가능합니다.

중단된 투자프로젝트의 VAT 환급에 관한 2026 년 6 월 23 일자 공문 제 4195/CT-CS 호

2026 년 6 월 23 일 베트남 세무당국은 중단된 투자프로젝트의 VAT 환급을 안내하는 공문 제 4195/CT-CS 호(“공문 4195”)를 발행하였습니다.

투자프로젝트가 주요 사업활동에서 매출 VAT 를 발생시키기 전에 종료되는 경우, 기업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이전에 환급받은 VAT 를 반환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프로젝트 종료 사유 및 조세행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중소기업의 CIT 면제에 관한 2026 년 6 월 11 일자 공문 제 3897/CT-CS 호

2026 년 6 월 11 일 베트남 세무당국은 시행령 제 20/2026/ND-CP 호에 따른 신설 중소기업(“SME”)의 3 년간 CIT 면제를 명확히 하는 공문 제 3897/CT-CS 호(“공문 3897”)를 발행하였습니다.

특히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도 적용되는 SME 기준을 충족하면 3 년간 CIT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병, 통합, 분할, 분리, 소유권 변경 또는 기업형태 전환으로 신설된 기업이나 주요 소유자·대표자가 다른 기존 또는 최근 해산된 기업에 참여한 일부 신설기업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 년 CIT 법 제 18 조 제 3 항에 명시된 일부 소득도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CIT 경감세율에 관한 2026 년 4 월 6 일자 공문 제 820/CST-TN 호

2026 년 4 월 6 일 조세정책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시행령 제 320/2025/ND-CP 호의 CIT 세율 15% 및 17% 적용을 명확히 하는 공문 제 820/CST-TN 호(“공문 820”)를 발행하였습니다.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100% 외국인투자기업은 연간 매출이 30 억 VND 이하이면 CIT 세율 15%를, 연간 매출이 30 억 VND 를 초과하되 500 억 VND 이하이면 17%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에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관계자가 있는 경우, 해당 특수관계자도 경감 CIT 세율 적용을 위한 관련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 과세기간에는 기업의 회계연도가 2025 년 CIT 법 시행일 이후에 개시된 경우 구체적인 경과규정이 적용됩니다.

공문 820 은 위 매출요건을 판단할 때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관계기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문의 문언상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외 특수관계기업은 이 특정 매출기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공문은 특정 납세자의 질의에 회신한 것이므로, 해외 특수관계자가 있는 기업은 과세당국의 추가 지침이나 실무가 마련될 때까지 신중한 접근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기 정보는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자문 의견이 아닙니다.
보다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당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SEOU ACCOUNTING AND CONSULTING COMPANY LIMITED

Hanoi Head office: 10th floor, Charmvit Tower, No. 117 Tran Duy Hung, Trung Hoa Ward, Cau Giay District, Hanoi

Tel: (+84) 24 3776 7049/50

Saigon branch: 14th floor, Citilight Building, No 45 Vo Thi Sau, Tan Dinh Ward, Ho Chi Minh City